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6촌 이내의 혈족
 - 다. 4촌 이내의 인척
 - 라.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아.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

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다만,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통한 투자중개업인 경우: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자

나.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통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

제5조(금융관계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보험업법」
7. 「상호저축은행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외국환거래법」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1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2. 「주택법」
23. 「예금자보호법」
24. 「담보부사채신탁법」
25. 「금융지주회사법」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 「농업협동조합법」
28. 「수산업협동조합법」
29. 「전자금융거래법」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3. 「공사채 등록법」
34. 「공인회계사법」
3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7. 「부동산투자회사법」
38. 「선박투자회사법」
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0. 「산업발전법」
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2. 「여신전문금융업법」
4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6. 「한국투자공사법」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대표·부대표·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5. 그 밖에 자산규모가 작거나 영위하는 금융업무가 금융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이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

간을 말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원에 대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는 요구 또는 권고일)로부터 5년

나.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았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인 경우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날(다만,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재임 또는 재직 당시 법,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인 경우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날부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해당 기업과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문책경고(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
 -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자본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정기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

인,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8.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가. 금융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나.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5.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그 은행의 자은행,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그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6.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가.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및 자은행
 - 나.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외의 다른 법인(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또는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을 말한다.

5.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감사인으로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사람(고문, 전문위원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자문용역을 지원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6. 해당 금융회사와 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9.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10.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임 임직원(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1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 위험관리 업무

제10조(겸직허용)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

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나.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다만,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회사를 제외한다.

다.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의 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나. 임직원 겸직개시·종료절차에 관한 사항

다.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라. 고객정보(「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객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에 관한 사항

마.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바. 겸직 임직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사. 임직원 겸직 관련 해당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담당 임직원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아.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등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및 분쟁해결, 금융회사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임직원 겸직의 절차 및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임직원이 겸직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를 마련할 것

가.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나.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다. 겸직의 목적

라. 겸직의 기간

마.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1.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경우

2.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상근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준법감시

인,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되는 경우(다만,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바목에 따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 손해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생명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4. 임직원 겸직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

련 자료

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임직원의 겸직 및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확인서가 제3항제4호 각 목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보완서류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겸직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겸직의 목적

2. 겸직의 기간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등 비상근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6항에 준하여 임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방법 및 절차

나. 이사의 자격요건

다.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라.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마.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바.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내 위원회(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절차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자격요건

나.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다. 경영승계 계획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라.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나. 최고경영자의 자격

다.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라.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마. 책임경영체제 확립

②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제1항의 지

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할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등의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외이사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것

2.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할 것

3. 금융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할 것(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법 제1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금융회사
4. 해산을 결의한 금융회사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은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과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할 것
2.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 다만, 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할 것

4.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고 그 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유형별[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감사위원, 업무집행책임자,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등]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총액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보수를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의 주요 특성

3. 그 밖에 연차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수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완전자회사등의 경영의 투명성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 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하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업무·재산상태 감사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하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가목 또는 나목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을 부담할 것

2. 완전자회사등을 포함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전체를 통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을 통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나.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 및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다.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

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 임원 및 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이하 같다) 등의 역할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내부고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9.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10.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11.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12.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
 1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3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의 생략, 감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다만,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그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은행, 금융투자업자(다만,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3. 그 밖에 자산규모 및 영위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준법감시인이 되려는 자가 임직원으로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금융회사
2.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
3.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협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전국은행연합회
 - 나. 금융투자협회
 - 다. 생명보험협회
 - 라. 손해보험협회
 - 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바. 여신금융협회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2.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 금융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조직구조와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8.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위험관리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부의 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
3.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 가.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 나.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 다.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 라.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 마.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 사. 재보험에 관한 업무

아.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4.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수행하는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내부통제 업무

2. 준법감시인의 경우 위험관리 업무

제25조(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는 법 제25조 및 법 제28조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 금융

관계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한 취득등으로 대주주

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4. 회사의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로부터 1개월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의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 보고서

5.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내역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7.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신청서의 서식, 변경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과 금융회사와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항 제3호·제4호·제8호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책임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

부터 2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 관계

⑥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32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⑦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법령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⑧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경우

⑨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

⑩ 그 밖에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용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은행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
6.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의 인·허가 취소
2.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5.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6.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7.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8.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제8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공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금융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5영업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 수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주주의 참석률

제9장 벌칙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한다.

제7조의2(중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하고, 제10조제2항제8호 중 “제22조”를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2조제1호”를 “법 제8조제9항제1호”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1]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26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및 기금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채

	<p>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p>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일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6. 대주주가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출자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 한한다)</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p> <p>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닐 것</p> <p>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7.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바. 제6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고

1. 위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0조제1항 관련)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및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사항의 충족 여부 검토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6.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 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후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5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보고의 접수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9.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점검
10. 법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조치
11. 법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
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유지·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 요청자에 대한 통보
14. 제11조제6항·제9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의 접수
15. 제19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사의

생략, 검사기간의 단축에 대한 조치

16.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변경 권고

17.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18. 제29조제5호에 따른 조치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명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5,000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5,000
다.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5,000
라.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5,000
마.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5,000
바.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6호	5,000
사.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7호	5,000
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	법 제43조	5,000

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8호	
자.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를 구성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9호	5,000
차.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0호	5,000
카.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 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1호	5,000
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2호	5,000
파.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3호	5,000
하. 법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4호	5,000
거. 법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5호	5,000
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 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7호	5,000
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8호	5,000
머.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 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9호	5,000
버.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 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0호	5,000
서.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	법 제43조	5,000

련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21호	
어.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2호	5,000
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3호	5,000
처.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4호	5,000
커.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5호	5,000
터. 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6호	5,000
피.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	3,000
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	3,000
고. 법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호	3,000
노.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4호	3,000
도.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3,000
로. 법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6호	3,000
모.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	법 제43조 제2항제7호	3,000

개 한 경우		
보.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1호	1,000
소.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2호	1,000
오. 법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3호	1,000
조.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4호	1,000
초.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5호	1,000
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6호	1,000
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7호	1,000
포.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8호	1,000
호.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9호	1,000
구.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10호	1,000
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광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11호	1,000